

「구미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저장장애 의심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저장장애 의심가구 적용범위(안 제4조)
-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자원봉사자 지원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합 의: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 합의되었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구미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의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 검토 결과,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장애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장애”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무질서하게 쌓아두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
2. “저장장애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 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 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최근 저장장애 의심가구가 늘어남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목적성과 필요성이 인정됨.
- 구미시의 경우에도 형곡동 아파트 주민이 수년간 쓰레기를 쌓아두어 이웃들이 악취로 피해를 입고 있었으나, 시와 이웃 주민 30여명의

도움으로 집을 치우게 된 사례(2022.07.14. KBS뉴스 보도), 구미회와 송정동 발전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저장장애 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사례(2023.08.11. 경북정치신문 보도), 그리고 송정동 아파트 저장강박증 의심 독거노인 화재(2023.12.17. 화재발생) 등 우리시에도 많은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음. 그동안 저장장애 의심가구는 읍면동에서 사례발굴, 사업수행(폐기물 처리 등 환경개선) 및 사후 모니터링(재발방지 실태조사)등 모든 일을 전적으로 처리함에 따라 특정 읍면동에 부담이 많은 것이 사실이었음. 이에 시차원에서 복지정책과를 컨트롤타워로 하여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대한 명확한 지원근거 및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장애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장장애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인권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한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제 정 안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제4조의 적용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가구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처리·수거 지원
2.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3. 심리상담 및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4. 지역 내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5. 자원봉사자 지원 등
6. 그 밖에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 신청은 관할 읍면동의 자체 인력·자원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읍면동장이 요청하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저장장애 의심가구 적용범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대상 대부분이 저소득층 등 복지 대상자인 것으로 볼 때 지원대상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및 정신건강 전문기관과의 연계 지원 등으로 저장행동 재발방지로 인한 사회적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제 정 안

제7조(자원봉사자 지원) 시장은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를 「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사회단체 및 기관 등과 연계 협력할 수 있다.

-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자원봉사자 지원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저장장애 의심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써 구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시설, 중독관리센터, 개인심리상담센터, 정신건강 전문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해 보임.

제 정 안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안 제9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 따라서 안 제9조는 실익이 없는 조항으로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별표 (참고자료)

○ 저장장애(Hoarding Disorder)란?

어떤 물건이 가진 가치와는 상관없이 그것을 버리거나 소유를 포기하는데 지속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질환을 의미함. 보통 그 물건이 나중에 필요할지 모른다거나 나중에 그만한 가치를 발휘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물건을 모아두기도 하며, 또한 그 물건에 강한 애착을 갖고 있을 수도 있음. 이런 문제가 심할 때에는 집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으며, 화재, 낙상, 비위생적인 공간들, 썩어버린 음식들 때문에 이웃주민들의 건강 및 안전까지 위협 받기도 함.

○ 원인

- 기질: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수집
- 환경: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이혼, 해고와 같이 스트레스가 되거나 외상적인 생활 사건이 수집을 유발
- 유전: 수집을 하는 사람들의 약 절반이 가족력이 있음

○ 주요증상

강박적 저장	-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보관함 - 물건을 없애는 것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쓸모없는 낡은 것들을 버리지 못함 -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팔지도 못하고 보관함
강박적 수집	- 불필요한 물건을 수집하여 모아둠 - 너무 많은 물건을 구입하거나 무료로 제공되는 물건을 모으는 과도한 행동 - 무가치하거나 쓰레기와 같은 것들뿐만 아니라 포장도 뜯지 않은 새로운 물건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것을 수집하여 모아둠

(출처: DSM-5 정신장애 쉽게 이해하기, 제6장 강박장애)